

## 집합투자규약 변경대비표

### ▣ 라자드코리아증권투자신탁 집합규약 변경 전·후 비교표

- 다 음 -

항목	변경전	변경후
제 3 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 3 항	<신설>	<p>17. 클래스 C-Pe 수익증권: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"연금저축계좌"를 통하여 판매회사의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</p> <p>18. 클래스 C-P2e 수익증권: 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」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, 퇴직연금제도가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(IRP)를 개설한 투자자 전용으로 판매회사의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</p>
제 10 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1 항	<신설>	<p>17. 클래스 C-Pe 수익증권</p> <p>18. 클래스 C-P2e 수익증권</p>
제 39 조(보수)3 항	<신설>	<p>(클래스 C-Pe)                     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7.00                     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3.70                     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35                     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25</p> <p>(클래스 C-P2e)                     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7.00                     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3.50                     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35                     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25</p>
제 41 조(환매수수료) 2 항, 3 항	클래스 C-Pe, 클래스 C-P2e 추가	<p>2. 클래스 C-P, 클래스 C-Pe, 클래스 C-P2, 클래스 C-P2e 및 클래스 S-P 수익증권: 없음</p> <p>③판매회사는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 52 조의 규정에 의한 "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" (클래스 C-P, 클래스 C-Pe, 클래스 C-P2, 클래스 C-P2e 및 클래스 S-P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"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")에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환매수수료의 부과를 면제 할 수 있다.</p>
제 52 조(수익증권의 통장거래)	클래스 C-Pe, 클래스 C-P2e 추가	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"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" (클래스 C-P, 클래스 C-Pe, 클래스 C-P2, 클래스 C-P2e 및 클래스 S-P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"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")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.

부 칙	<신설>	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증권신고서(일괄신고서)의 효력발생일(2017년 8월 2일)에 효력이 발생하며, 효력 발생일부터 기존 투자신탁약관을 대체한다.
-----	------	---

-끝-